

의안번호	2200951
의 퇴 인	한창민 의원
회 답 일	2024.08.01.
추계번호	24C0691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 (대출금리)	(제1항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대출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생활비대출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다. (제2항) 제1항의 생활비대출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의무규정
2	안 제17조 (대출원리금 계산)	(제1항) 채무자가 상환하여야 할 등록금 대출원리금은 등록금 대출잔액으로 한다. <단서 삭제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(대출금리) 안 제17조 (대출원리금 계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대출을 제외한 ‘등록금대출’의 금리를 무이자화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재단채 추가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

-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’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, 입학금과 수업료 등에 대한 등록금 대출과 숙식비 및 교재구입비 등을 위한 생활비 대출로 나뉨
 -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부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이며,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부생 등은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됨
 - 최근 3년간 학기별 등록금 대출 현황은 아래와 같음

[표] 최근 3년간 학기별 등록금 대출현황

(단위: 억 원, 명, 만 원)

구 분	2021년		2022년		2023년		평균
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1학기	2학기	
대출금액(A)	2,345	1,958	2,263	2,039	2,117	1,969	2,115
대출인원(B)	98,576	95,206	92,521	90,069	81,210	82,423	90,001
1인당 대출금 (C=A/B)	238	206	245	226	261	239	235

주: 대학원생 ICL시행('22년~) 금액 포함

자료: 교육부
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’ 중 등록금 대출 규모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나, 증가할 구체적 대출 인원 수 및 금액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개정안 시행시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‘다른 대출상품으로부터 ICL로의 전환 수요로 인한 대출 증가액과 6구간 이상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이자 수입 감소액 등¹⁾’으로 인한 재원 조달 목적의 재단채 발행 증가분과 이에 따른 재단채 이자 지출 증가액임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ICL의 ‘무이자 대출상품이라는 특성’으로 인하여 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²⁾’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부터의 ICL로의 대출 전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학생은 본인과 가정의 재정 여건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타 금융상품의 대출조건 등을 종합하여 ICL 이용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, 이자율이 0%인 대출상품

1) 이외에 자발적 상환 감소로 인한 필요 재원 증가 가능성도 있음

2) 2024년 2학기 기준 이자율 1.7%

- 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시 등록금 대출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³⁾
- 다만, 구체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한 대출 수요증가분에 대한 탄력성 추정, 즉 증가할 구체적 대출인원 수 및 금액 등 추정에 한계가 있어 조달금액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
 - 또한, 개정안에 따라 등록금대출 이자가 면제될 경우, 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 대출자에게서의 이자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재단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출규모 증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수입 감소분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
 - '24년 현재(2학기 기준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(원)생의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 및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와 기준 중위소득 이하(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) 대학(원)생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(졸업 후 2년 이내)의 기간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가 면제 되고 있음⁴⁾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자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6구간 이상 대출자에 대한 이자가 면제되어 이자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구간에서 증가하게될 ICL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관련 이자감소분에 대한 추정역시 곤란
 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3) 이외에도 유사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있는 '국가장학금'제도의 지원단가 및 대상 등의 변화에 따라 '취업 후 학자금대출'을 이용하는 인원수 및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, 시중 예·적금 및 투자상품 등의 금리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

4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